



중앙방역대책본부



수신 수신자 참조
(경유)

제목 코로나19 예방접종 접종증명·음성확인제 지침 개정(제2-1판) 안내

1. 관련

- 가.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(관계부처 합동, 2021.10.29)
- 나. 중앙방역대책본부-22745(2021.10.29), -23028(2021.11.2)호

2. 방역조치 강화방안 및 이행계획('21.12.3,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)에 따른 '전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조정'으로 접종증명·음성확인제 적용대상 등이 변경됨에 따라 붙임과 같이 「코로나19 예방접종 접종증명·음성확인제 지침(제2-1판)」을 개정하오니,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<주요 변경내용>

구분	주요 내용
적용시설 추가	(기존) 고위험 다중이용 시설 5종, 감염취약시설 → (추가) 식당·카페, 학원, PC방, 영화관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 11종 추가
유효기간 설정	'접종증명' 및 '기타 건강상의 이유로 인한 예외자'의 유효기간을 180일로 적용
예외자 확대	코로나19 백신 구성물질에 중증 알레르기 발생 이력 으로 접종금기에 해당하는 경우, 보건소에서 진단서 확인 후 예외확인서 발급
접종완료 완치자	코로나19 감염력이 있는 접종완료자(접종완료 완치자)는 유효 기간(180일) 미적용
청소년 적용	예외인정 범위를 (현행) 18세 이하→11세 이하로 조정 (단, 2022.2.1.부터 시행)

붙임 1. 제2-1판 주요 개정사항.

2. 코로나19 예방접종 접종증명·음성확인제 지침_(제2-1판). 끝.

